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

2024. 11.

관계부처 합동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질병관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록원 등

목 차

1. 가습기살균제참사 분야(26개) ····· 1

2. 4.16세월호참사 분야(32개) ····· 38

3.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 분야(22개) ····· 85

분야 1 가습기살균제참사 분야(26개)

연번	권고사항	대상
1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대통령 공식 사과	대통령
	▸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등 적극적 피해자 지원	환경부장관
2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 개정* *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3	▸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4	▸ 신속심사 대상을 全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한 피해지원	환경부장관
5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을 구제법에서 구제 및 지원법으로 체제 개정* * 개정시 피해지원 항목확대, 질환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확대, 아동청소년 피해자 간병비 지급 포함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6	▸ 피해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정신건강 조사 · 연구 진행,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마련	환경부장관
7	▸ 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개선 등 전문위원 운영 투명성 제고	환경부장관
8	▸ 추모 지원제도 마련 및 추모 추진체(민·관협의체) 구성	환경부장관
9	▸ 디스커버리 제도(소송전 증거 절차) 도입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제도 추진	법무부장관
10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 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위증죄 관련 조사와 고발 가능	국회의장
11	▸ 실증자료 생산시기 규정 및 미실증 책임 규제규정 도입	공정거래위원장
12	▸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설치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13	▸ (가칭)국가독성관리위원회 설치* * 환경보건 및 공중보건 영역을 포괄하는 범부처 위원회	국무총리
14	▸ 화학물질관리본부(환경부) ·위해성평가부(국립환경과학원)로 기존조직 확대 및 범부처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독립기관 설립	환경부장관
15	▸ 국가독성연구전담기관 또는 국가독성연구프로그램 마련	과기정통부장관
16	▸ (가칭)「화학안전기본법」 제정 및 상설소통협의체 구성	환경부장관
17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성격 확립 및 전담인력 등 추진체계 마련	환경부장관
18	▸ (가칭)화학안전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환경부장관
19	▸ 효율적 화학물질정보 관리 시스템 및 제도 마련	환경부장관
20	▸ 중점관리물질신고기준 강화 및 제품등록제 도입	환경부장관
21	▸ 화학제품의 비관리 품목과 사각지대 품목 실태조사 실시 및 시장감시 범위 확대	환경부장관
22	▸「화학제품안전법」 제36조 (새로운 위해성 보고 및 조치 권고)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23	▸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를 활용한 제품 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부처 확대 도입	산업부장관
24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 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사하고 공표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고용부장관 환경부장관
25	▸ (가칭)기업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법무부장관 고용부장관 환경부장관
	▸ 국민연금 ESG평가지표 내 소비자안전·공급망 실사·인권실사 등 반영	복지부장관
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고용부장관 환경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1-1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공식 사과	(1) 대통령

□ 권고 내용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제조·판매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기업의 책임과 함께, 지난 30여 년간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 이에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발생시키고,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환경부장관은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책무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향후 계획

1-1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등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2)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1

□ 권고 내용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제조·판매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기업의 책임과 함께, 지난 30여 년간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 이에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발생시키고,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환경부장관**은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책무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17년 특별법 제정 이후 2차례의 법 개정('19.2, '20.9)을 통해 피해 인정범위 확대, 구제급여 상향 등 폭넓은 인정과 지원 추진 중

* '24.7월말 기준 5,787명 피해인정, 1,788억원 지급

-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 호흡기 질환 발생 여부의 판정 체계에서 종합적 건강피해의 발생 및 악화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하는 체계로 개편

*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안질환, 피부질환 등 모든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 및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피해 인정 여부 결정

· 관련 연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건강피해' 인정('23.9월)

- **(금전적 지원 강화)**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등 구제급여 지급 신설·상향

지원 항목	강화 내용 (금액은 '24년 기준)
장해급여	▸신설 (장해등급에 따라 약 42백만원~212백만원 일시금)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기존 약 40백만원 → 약 126백만원)
요양생활수당	▸등급 세분화(3개→5개) 및 금액 상향(등급에 따라 18만원~210만원)

○ 법률지원, 의료지원, 군·학사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

-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민사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보고서 발간 등 지원

- **(의료지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16개소를 지정·운영하여 피해자·노출확인자 대상 생애주기별 검진 등 모니터링, 정신의학 검사 제공

- **(군·학사지원)**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의 진료·훈련 배려, 학생 피해자의 진료로 인한 불가피한 결석 시 출석 인정 등 지원(국방부·교육부 협업)

  *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있으며, 국가는 구제와 지원의 책무를 가짐

□ 향후 계획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피해자 지원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이행

1-2 「가습기살균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1)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1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들의 피해인정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성질환에 대한 피해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3)으로 가습기살균제와 생명·건강상의 피해 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던 것을,

- ①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②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③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

- 더불어, 현행법상 인과관계 반증을 위해서는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자(기업)가 증명하도록 하여, 사실상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 관련법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 향후 계획

○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특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역학적 상관관계 조사·연구 등 지속 추진

1-3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 연장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은 상당수 환경피해의 경우 그것이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기 바랍니다.

* 소관 변경 : 법무부 → 환경부(법무부, 소관부처 변경 요청, '22.9)

□ 이행 현황

○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 연장은 특별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각 법무부 소관) 등 일반법을 개정하기보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등(환경부 소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통해 권고사항의 구체적 이행이 가능

○ 이에 따라,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死傷)케 한 경우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적극 검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신고 위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위반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 이행 위반 등

○ 공소시효(現 10년*) 연장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관련분야 전문가 검토 수행

- 공소시효 연장 사례조사 및 화학제품 정책 전문가 검토(~'23.12), 형법 관련 전문가 검토(~'24.6)

*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칙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이 경우 「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됨

□ 향후 계획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소시효 연장방안 도출(~'24.12)

1-4	신속심사 대상 全 질환 확대 등 신속한 피해지원 실시	(1)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3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신속심사대상을 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한 피해지원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신속심사로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습기살균제와 해당 건강피해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인정기준 마련이 필수이나, 현재 기준 마련이 가능한 질병은 제한적

- 신속심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질환에 대한 피해인정 여부만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 신속심사를 거치더라도 질환의 악화 여부 검토, 피해인정 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개별심사가 별도로 필요하여 신속심사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상황
- 따라서,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개별심사에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 중

○ 개별적인 인과를 토대로 개인의 종합적인 건강피해를 판정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건강피해 조사기관 추가 확보 및 참여 전문인력 확대 등으로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한 심사 속도 개선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누계) : ('20) 4,114명 → ('22) 4,274명 → ('24.7.) 5,787명

- '23년에는 전년대비 3배 인원 심사 수행으로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심의 보류·대기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판정 완료

* 필수자료(폐기능 검사 서류 등) 미제출자, 최근 판정을 개시한 폐암피해 신청자 등

□ 향후 계획

○ 신속한 건강피해 조사·판정을 통한 피해구제 및 지원 지속

1-5 「가습기살균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체제 개정 (1)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1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구제'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해 현행 '구제법'을 '구제 및 지원법' 체제로 개정하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 항목 확대와 전국 병·의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질환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확대

- 연령차별 없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급 등

□ 이행 현황

○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및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이며,

- 그간 2차례의 법 개정('19.2, '20.9)을 통해 피해인정 범위 확대, 구제급여 상향 등 폭넓은 피해인정과 지원을 추진 중

○ 피해로 인정되는 질환의 제한을 없애고, 장해급여 항목 신설 등 피해지원 항목을 확대하였음('20.9)

- 질환 치료 시 전국 병·의원 이용 및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용 중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 중

○ 현재까지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간병비 지급 중

□ 향후 계획

○ 피해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확대 검토

1-6	피해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1)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4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건강 조사·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며 생애 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대상으로 정신건강 모니터링* 수행 중이며, 청소년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함께하는 마음산책") 병행 제공 중('24년 연3회 예정)

* 정신건강 분야 총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연세대학교)를 지정하고('20.3월), 전국 144개소 협약 상담소를 통해 심리상담 운영, 필요시 정신의학과 연계 진료 제공

** 청소년 진로탐색, 부모 양육, 가족간 소통 등 관심주제를 선정하여 워크숍·강의형식 제공

○ 의료 전문가를 통한 개인별 심리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대상 힐링캠프를 통해 심리적 안정 도모**

* 간호 전문인력의 지속적 밀착상담으로 건강관리 및 심리적 안정 유도(콜링유 서비스, '21~)

** 국립공원 생태탐방, 자연해설, 심리프로그램 등을 통해 힐링서비스 제공(힐링캠프, '18~)

□ 향후 계획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확대 추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업하여,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연계 제공('24~)

1-7	전문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1)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3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전문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현행법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조사판정전문위원회·재심사전문위원회는 호흡기내과·예방의학 등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환경보건·독성학·법학 분야 대학·연구기관 등의 재직자, 판사·검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구성 및 해당 명단을 공개 중

- 또한, 피해자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3항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중

○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지급신청자에게 지급 결정 사실과 조사·판정 및 심의 절차에서 해당 결정이 이루어진 이유를 함께 통지하며, 지급 결정 과정에서 수행된 지급신청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내용도 함께 통지

○ 또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최종 심의·의결기구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경우 성별, 연령, 질환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세칙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공개하여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도 알 수 있도록 운영 중

□ 향후 계획

○ 피해구제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지속적인 투명한 운영 추진

1-8	추모 지원제도 마련 및 추모 추진체 구성	(1)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1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추모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추모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민·관 협의체와 같은 추모 추진체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19.2)

- 피해자단체가 추모사업 관련 지원 신청 시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가능

※ 추모사업 등을 포함한 '피해자단체 사업 지원' 신청·심의 절차 설명회 개최('24.2월)

< 관련법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 **(법 제9조제4항)**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영 제14조의2제1항)**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2.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에 관한 사업

□ 향후 계획

○ 가습기살균제 관련 추모사업 추진 시,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원

1-9	디스커버리 제도 등 집단적 피해 구제 제도 도입	법무부장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7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은 안전사고 발생 시 개별 피해자의 경우 소송 부담 및 소송 실익의 한계로 법적 대응이 힘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전 증거절차)를 도입하는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일반적으로 디스커버리 제도의 민사소송법 도입 여부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의 전체적 체계 및 심리원칙, 소송절차의 효율성, 국민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임

- 아울러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방대한 자료 제출 등을 위한 당사자 비용 부담 증가, 이를 악용한 불필요한 절차 남용 및 절차 지연의 문제, 우리와 미국 법 체계, 문화적 차이 등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있음

○ 민사소송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 민사소송법은 공정성이 가장 중시되는 절차법이며, 그 공정성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누가 당사자가 되든, 어떤 재판이든 간에 동일한 룰에 의한 소송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임

- 민사소송절차가 특정 사건, 특정 당사자에게만 제도를 달리하여 적용된다면 절차의 공정성 및 당사자 간의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고, 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1 실증자료 생산시기 및 미실증 책임 규제 규정 도입 (1)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4

□ 권고 내용

○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들이 허위·기만 광고를 하지 않도록, 실증자료의 생산 시기를 규정해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표시·광고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간주하는 등 미실증 책임에 대한 규제 규정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그간 공정위는 표시·광고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실증제도 운영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다른 법률에 근거한 실증제도 운영현황, 해외사례, 표시·광고 실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검토하였고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자문도 진행하였음

- 올해 친환경제품 판매 사업자 약 250여 개를 대상으로 실증제도 운영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향후 계획

○ 그간 실시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운영실태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자료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임

1-12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도입	(1)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 권고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국가 중독센터(Poison Center)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중독분석실(7개소) 운영('16~)을 통해 중독물질 성분을 분석·제공하고, 해독제 거점병원(18개소) 운영('15~)을 통해 해독제를 비축·제공

* 중독분석실 : ('16) 1개소 → ('19) 6개소 → ('23) 7개소 → ('24) 6개소(제주 제외)

- 중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18~)하여 해독제 및 중독분석 요청·접수, 해독제 사용법에 대한 정보 및 치료지원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 사업을 통해 급성 중독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 중

□ 향후 계획

○ 응급실 기반으로 급성중독환자 치료를 위해 해독제 추가구매·비축 및 실시간 재고 관리 구현 등을 위한 중독정보시스템 개선

○ 중독정보시스템 활용 지침 배포 및 응급의료기관 대상 시스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응급실 기반 중독환자 치료지원" 사업 활성화

1-12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설치	(2)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043-219-2911

□ 권고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조사·분석체계)** 국가중독센터 도입의 과학적 기반확보를 위한 중독 조사·분석 운영체계 구축 및 심층실태조사 실시

- 응급실 기반의 조사분석체계 구축, 조사지표 개발 등 추진

  * 중독심층실태조사 및 사례분석 연구, 고려대 산학단 ('22.4~12)

  * 중독 심층 조사 분석 및 예방에 관한 연구, 고려대 산학단 ('23.1~12)

○ **(예방사업)** 실태조사('22~'23) 결과를 바탕으로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자료 개발 및 예방사업 실시

  * 청소년 대상 중독 질환 예방교육 실시('23년, 332개소, 약 11만명 자체교육)

  * 중독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홍보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연구 중('24~)

□ 향후 계획

○ 생애주기별(세대·인구집단별) 중독 위험요인 분석 및 예방활동 추진

- 다양한 중독 조사자료를 분석, 중독 취약층(영유아, 고령자 등) 및 가정내 일상생활에서 중독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24), 활용('25~)

  * "중독의 생애주기별 위해 요인 평가에 기반한 예방전략 개발" 연구 중(~'24, 고려대 산학단)

○ 손상예방법* 내 중앙손상관리센터**를 활용, 중독 등 손상예방을 위해 발생 원인·현황 등 관련 조사·통계 생산 및 예방관리 사업 추진 예정

  *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1.23 제정, '25.1.24 시행예정)
  제2조 정의 中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

** 손상예방법에 따라 손상예방연구, 관련 정보·통계 수집·제공, 교육 및 홍보업무 수행

1-13	(가칭)국가독성관리위원회 설치	(1)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환경정책팀 044-200-2244

□ 권고 내용

○ **국무총리**는 유해한 화학물질과 같은 독성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및 공중보건 영역을 포괄하는 범부처 형태의 '(가칭)국가독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현재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은 목적·용도 등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개별 법령으로 관리* 중임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처리)제품 ▲(식약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농림부·농촌진흥청) 농약 및 원제, 비료·사료 등

- 제품 안전관리에 한해 부처간 협의·조정 체계로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17.9,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산업부·복지부·환경부·식약처 등 12개 부처 참여, 사전 안전관리 또는 사후 시장관리 조치필요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 등 협의

○ 화학물질 등 독성물질 관리·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행정위원회 설치는 광범위한 기능*, 그간 관리대상별 특성(제품별 유해정도 등) 및 부처별 전문성에 따라 관리제도를 차별화·분담해 온 현 관리체계의 효율성, 조직·예산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 국가수준의 독성정보 연구·관리, 독성물질 및 위해성평가관리, 노출 피해 질환 관리 및 국가통합감시체계 설치·운영 등

□ 향후 계획

○ 부처별 전문성에 따라 분담해 온 현행 체계 유지하되 범부처 협력 필요시 국무조정실이 조정·관리

1-14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관리부처와 기관 간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내 화학물질 관리조직을 '화학물질관리본부'(차관급 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로 확대하기 바람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과를 '위해성평가부'로 확대하기 바람
- 중장기적으로는 범부처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화학물질청'이나 '통합 위해성평가기관'과 같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기 바람

□ 이행 현황

○ 그간 화학물질안전원('13)을 신설하고 화학안전과('15) 및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17) 하는 등 화학안전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

- 차관급 조직설립 등 대규모 조직 개편·확대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여 추진상 애로가 있는 측면

○ 대안으로서 화학물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기관 간 기능 조정('24.4.30)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능 수행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
- 그 결과,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화학물질 전주기 안전관리를 담당토록 하여 화학분야 전문성 강화

□ 향후 계획

○ 국민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지속 개선 노력

1-15 국가 독성연구 전담기관 등 마련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 044-202-4751

□ 권고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수준에서 범부처 방식으로 독성을 연구하고 독성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독성연구 전담기관 또는 국가 독성연구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이하 '안전성연')는 출연금을 통해 개별부처 수요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환경에서 접촉하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독성 연구**를 수행 중

-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화학물질 독성연구', '24년도 **출연금 41억원** 지원

▸ '23년도 주요 연구성과
- ① 가습기살균제 주요물질(PHMG-p 등)의 호흡기 질환간 영향규명을 위한 약물 병용투여의 간 손상 기전 규명(PHMG-p의 독성 간염(Toxic hepatitis) 증거 확보, '23.11.)
- ② 흡입유해물질(프로필렌글리콜 등)의 체내 섬유성 폐 손상 영향평가(JCR 상위 5% 논문 게재, '23.3.)
- ③ 오가노이드 기반 과불화화합물의 체내 신장암 유발 기전 확보(국내특허출원 '23.10, PCT출원 '23.10.)

▸ '24년도 주요 연구내용 : 프탈레이트·비스페놀·파라벤·PHMG 등 생활환경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인체영향평가 기술 개발 및 폐 손상 등 주요 질환 기전 규명

- 독성·안전성 분야 관계법령, 정책·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공유를 위해 **독성정보포털**(www.kitox.re.kr/doksa/) 구축·운영('23.5.~)

□ 향후 계획

○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화학물질 독성연구 사항 발굴 지속

○ 범부처 독성 정보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사업'(한국환경공단, '25.~'27. 총사업비 8,291백만원) 참여 논의·구체화

※ 기업의 화학물질이 등록·평가되는 환경부 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중심으로 기업·국민 등을 대상으로하는 독성정보 제공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추진 중이며, 안전성연은 기술자문·데이터 표준화 등 협력사항을 논의 중

1-16	(가칭)「화학안전기본법」 제정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4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화학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화학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상설소통협의체'를 구성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기본법)** 법률의 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바, 업계·시민사회 및 국회 등과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선행 필요

- 다만, 권고 사항에서 제시한 기본법의 주요 내용 중 대다수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

* ①화학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완료('23.12)
②이해당사자 상설소통협의체 구성·운영 → 화학안전정책포럼 구성·운영 중
③통합화학안전정보시스템 구축 →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등

○ **(상설소통협의체 구성)**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환경부훈령 제1574호, '22.12.20.)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의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및 전문가 등)가 참여·소통하는 체계와 절차를 규정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의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소통하는 '상설소통협의체'로 화학안전포럼 운영중('22년~)

참고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해당사자 소통) 화학안전정책 관련 환경부의 업무담당자와 이해당사자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거나 의논할 수 있다.
1. 화학안전정책과 연계되는 환경부 소관의 법령 및 정책
2. 화학안전정책과 연계되는 다른 정부기관 소관의 법령 및 정책

□ 향후 계획

○ 화학안전정책포럼 지속 운영(수시)

1-17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추진체계 마련 등 |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8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의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전담인력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16년부터 지자체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추진

- 매년 4개 지자체를 선정, '23년까지 총 32개소 지역대비체계 구축지원

○ '24년부터는 화학물질 취급량, 사고이력 등에 따라 우선 구축*이 필요한 지역 지원하는 추진체계 마련

* 지역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및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 지자체 대상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작성 교육(5.23~5.24)

- 용역사 선정, 착수보고(6.10) 및 지자체 대상 워크샵 개최(6.10~11)

-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개정 지원 대상 선정 알림(8.1)

※ 전남 영암군,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 등

-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활성화 전문 기술지원팀 등 운영('24.1~12)

□ 향후 계획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지속 추진('24~)

- 각 지자체 방문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사업 진행

- 지역대비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추진

○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활성화 평가·분석을 통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기술지원 방안 연구 용역(안전원, '24.5~)

1-18	(가칭)화학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가칭)화학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이해관계자들과 국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현재, 화학관련 법령별로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 중

시스템명	근거법령	운영시기	운영내역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9조	'05~	화학물질 등록.신고 민원처리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	'17~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관련 정보제공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화학제품안전법 제47조	'1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민원처리 및 정보제공

○ 중장기적으로 국민 접근성 개선 및 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화학물질 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3.12.22)

국정과제 68-5

▪ (가칭)화학물질 통합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 OECD 표준 데이터형식 차용, 정부(범부처)·산업계·시민사회에서 활용

□ 향후 계획

○ 화학제품관리 차세대 플랫폼 1차년도 구축*(~'24.12) 및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27)

* AI기반 화학제품 신고·승인 자동 검증, 화학제품 안전정보 공개, 데이터 표준화 등

1-19 효율적인 화학물질정보 관리 시스템 및 제도 마련 |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화학물질정보관리를 위해 상위사용자와 하위사용자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수집된 물질정보가 하위사용자나 각 부처 시스템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예정

-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3.12.22)

○ 아울러, 유해성 정보의 확보 범위 확대 및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위해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 추진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24.2.6)

*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운영현황 조사, 유해성정보 DB 구축·제공, 유해성정보 작성·제출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

□ 향후 계획

○ 화학제품관리 차세대 플랫폼 1차년도 구축*(~'24.12) 및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27)

* AI기반 화학제품 신고·승인 자동 검증, 화학제품 안전정보 공개, 데이터 표준화 등

1-20 중점관리물질 신고기준 강화 및 제품등록제 도입 |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69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흡입 노출과 같은 위해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중점관리물질 신고기준을 강화하고, 제품등록제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중점관리물질)**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용도·함유량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도록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화평법 개정, '24.1.4 시행)하여 중점관리물질의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다만, 중점관리물질 신고기준 수량(현행 연간 1톤 초과)을 조정하는 것은 종합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

- 국회*에서도 '다른 국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18.2)'

** (EU, REACH 규정) 고위해우려물질 신고대상은 연간 1톤 초과한 경우임

○ **(제품등록제 도입)** 위해우려가 높은 흡입노출 위험제품은 현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에서 이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제품등록제 도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해성평가 등을 통해 위해성이 있는 경우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

- 가습기처럼 흡입노출에 의한 인체위해가 우려되는 분사제형의 살생물제와 보존제의 경우 사용가능물질 목록(함량제한)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에서 규정

□ 향후 계획

○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제도 시행('24.1.4~)

○ '비관리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품목 지정 고시* 개정 추진(지속)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1-21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시장감시 범위 확대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9

□ 권고 내용

○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의 비관리품목 및 사각지대 품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장감시 범위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규정)** 「화학제품안전법」 제7·8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실시 후 위해성이 있는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제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

○ **(현황)** '비관리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을 확대*하였고, 기존 품목의 신규물질 추가 등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

* (품목 수, 누적) ('15.4) 8 → ('16) 18 → ('17) 23 → ('19) 35 → ('20) 39 → ('22) 43 → ('24.7) 44

□ 향후 계획

○ 위해성평가 등을 반영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등 고시** 개정 추진('24.12)

* 세정제·세탁세제·탈취제 등 기관리 품목 안전기준 강화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 '비관리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품목 확대(지속)

1-22 「화학제품안전법」 제36조 위반에 관한 벌칙 조항 신설 | (1)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보고 및 조치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에 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정보 미보고로 인한 피해 경중의 고려 없이 단순 미보고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벌칙 처분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

※「제품안전기본법」상 중대사고 보고위반 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 처분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제27조(과태료) 사업자는 시중 유통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사고(사망·화재·폭발사고, 전치 4주 이상 치료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 처분

○ 타법에서도 유사한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임

- 아울러,「화학제품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위해성 등에 관한 보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과처분으로 벌칙조항 신설은 신중한 접근 필요

법률명	위반사항	과태료	비고
「화학제품안전법」	새로운 위해성 등의 보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0조제1항제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상사례의 보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7조제2항
「식품위생법」	이물발견 신고 접수 후 미보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01조제1항제5의2
	이물발견 신고 접수 후 거짓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8조제2호
「약사법」	부작용 등의 보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98조제1항제7의7호
「의료기기법」	부작용 관리 의무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54조 제1호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6조제1항제2의2
	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6조제1항제3호

□ 향후 계획

○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1-23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 활용 제품 관리체계 구축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419

□ 권고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등 소비자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를 활용한 위해 제품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관계 부처에 확대 도입하기 바랍니다.

< GS1의 GPC 개요 >

○ **글로벌 제품분류체계**(GPC: Global Product Classification)는 **소비자 상품 분류를 목적**으로 유통·물류 국제 표준화기구인 GS1*에서 제정한 **분류체계 표준**

* **GS1(Global Standard No.1)**: 전 세계 1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통·물류 분야 국제 민간 표준화기구, 대표적인 표준으로 **상품을 식별하는 '바코드'를 제정·운영**

○ **GPC는 일반적 4단계 분류체계를 확장 분류(4단계+α(속성))**할 수 있어 **사용연령·용도** 등 **추가 구분**이 가능하고, 소비자·제조업자·판매업자·규제기관·온라인플랫폼 업자 등이 **일관되게 제품을 분류하고 정보 공유**할 수 있어 **제품 안전관리에 적합**

□ 이행 현황

○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를 활용하여 국내 제품 안전관리제도에 맞게 변형한 표준 제품분류체계 개발('22.12월)

○ 표준 제품분류체계 전산화 시스템(www.gpck.kr) 구축('23.12월)

○ 시스템 사용자 가이드북(①적용편·②등록편·③활용편) 마련('23.12월)

○ 환경부(생활화학제품)·식약처(의약외품)에 표준 제품분류체계 활용 설명

* '표준 제품분류체계 도입·활용 확대 방안'을 국조실 등 관계부처에 공유('24.5.8.)

* '표준 제품분류체계' 적용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환경부 7.11., 식약처 8.14.)

□ 향후 계획

○ 표준 제품분류체계 전산화 시스템의 데이터 정확성, 타부처 품목과의 연계성 확인 등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24년~)

○ 제품안전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표준 제품분류체계가 활용 확대될 수 있도록 국조실·환경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지속 협의('24년~)

1-24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법무부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 02-2110-3782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사하고 공표하도록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타 부처·기관 추진 정책 고려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22. 2. EU 공급망실사지침 발의 시점부터 EU 주요국 공급망 실사 법제화 대비 민관합동 설명회 개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등 관련 대응을 주도해왔으며, 향후 3~5년간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 컨설팅, 업종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국내 기업의 대응력 강화 정책 지속 추진 예정

  ※ 산자부 보도자료 '국제 공급망 위기, 기업 책임경영으로 넘는다'(23.7.6.), '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24.5.9.), '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24.7.8.) 등 참고

- 기업들의 혼란 및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부처 추진 정책과의 통합적 고려 필요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4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사하고 공표하도록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화학물질 제조·판매 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도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 다만, 원료물질의 수급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실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권고내용 이행을 위해서는 다수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

- 향후,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겠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4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3)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1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사하고 공표하도록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본 권고 사항은 다수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법 제정에 대해 관계부처·이해관계자·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향후, 해당 제도가 논의될 경우, 환경문제와 관련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등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 협조 추진

□ 향후 계획

○ 제도 개선 논의 시 적극 검토 및 협조 추진

1-25	(가칭)기업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법무부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 02-2110-3782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 인권 강화를 위해 (가칭)기업 인권경영보고서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ESG평가지표에 제품안전 외에 소비자안전·공급망실사·인권실사(피해구제 포함)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타 부처·기관 추진 정책 고려 필요

- '23. 10., 7개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제3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2026년 이후로 연기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기준 초안 마련 논의 과정에서 국내 대상 기업, 도입 시기, '인권경영' 등 세부 공시 내용에 대한 검토 예정

- 기업들의 혼란 및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부처·기관 추진 정책과의 통합적 고려 필요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5	(가칭)기업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6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 인권 강화를 위해 (가칭)기업 인권경영보고서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ESG평가지표에 제품안전 외에 소비자안전·공급망실사·인권실사(피해구제 포함)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근로자 등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의 관장업무를 고려할 때, 해당 권고내용 이행을 위해서는 다수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

- 향후,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겠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5	(가칭)기업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3)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1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은 기업 인권 강화를 위해 (가칭)기업 인권경영보고서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ESG평가지표에 제품안전 외에 소비자안전·공급망실사·인권실사(피해구제 포함)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본 권고 사항은 다수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바, 향후 기업 인권 강화를 위한 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등이 논의될 경우, 환경·안전 등 환경부 소관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협조 추진

□ 향후 계획

○ 제도 개선 논의 시 적극 검토 및 협조 추진

1-25 국민연금 ESG평가지표에 소비자안전 등 반영 (4) 보건복지부장관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044-202-3653

□ 권고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ESG평가지표에 제품안전 외에 소비자안전·공급망실사·인권실사(피해구제 포함)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 국민연금의 ESG 평가에 산업별 특성과 기업 가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관리 및 인권, 산업안전, 제품안전과 소비자 보호 등 지표 개선*(52개 → 61개 지표)

*「국민연금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 개선 및 국내채권 ESG 평가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수행('20.)하여, ESG 평가체계 개선 및 국내채권 ESG 평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 국민연금의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 ESG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ESG 통합전략을 국내주식('20.~), 국내채권('21.~), 해외주식·채권 대상으로 확대 적용('23.~)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이행 완료)

1-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법무부장관

법무부 공공형사과 02-2110-3533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민사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입증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

- 인과관계와 같은 사실관계의 확정은 법관이 제반 사정을 합리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에도, 법률로 이를 일률적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반함

-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민사법상 원칙으로, 법률을 통해 일률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영세소상공업자 등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가능성

- 중대시민재해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대형사건뿐만 아니라 영세 소규모 식당에서의 식중독 발생과 같은 사건도 포함될 수 있는바, 사안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소송비용 등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해당 권고내용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과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대 시민재해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 이는 산업안전의 영역이 아닌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생산 제품 안전의 영역임

○ 이에, 고용노동부의 소관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나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겠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 (3) 환경부장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및 「제조물 책임법」 등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하는 일부 입법례는 존재

< 관련법규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①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②노출 이후 질환발생 또는 기존 질환 악화, ③노출과 질환의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이 모두 증명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추정.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①제조물이 정상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②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초래되었으며, ③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추정.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징벌적 성격의 법률로서,

- 원료·제조물 분야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제조물 책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旣 반영

□ 향후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논의 시 적극 검토 협조

1-26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 (4)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044-200-4419

□ 권고 내용

○ 국회의장·법무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손해배상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권고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 소송상 인과관계 인정은 개별 사안별로 법원에서 판단해 보아야 하는 사실관계 영역으로 법률로 일괄 추정하는 것이 민사법 체계에 적합한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분야 2 4.16세월호참사 분야(32개)

연번	권고사항	대상
1	▸ 세월호참사 관련 공식 사과와 재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 및 관련 업무체계 구축	대통령
2	▸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수사 또는 감사 실시, 불법행위 발견시 고발 및 징계 요청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방부장관 국조실장 해수부장관 행안부장관 기재부장관 법제처장 인사처장
3	▸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재발 방지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에 불법 부당한 명령 거부권 규정	국회의장 인사처장
4	▸ 기록물 고의 반복해 미등록한 경우, 제재 및 처벌 위한 「공공기록물법」 등 개정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5	▸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재발방지를 위해 '세월호특조위 방해사건'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추가	인사처장
6	▸ 사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료제공 및 필요한 법령·제도·절차 운용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7	▸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전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국정원장
8	▸ 불법사찰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재정비 및 독립 감찰기구 도입	국회의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방부장관
9	▸ 세월호지원단 총괄 역할 강화 및 장기지원계획 수립 등 피해지원 개선	국조실장
10	▸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 *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부상, 질병의 치유시까지'로 변경	해수부장관
11	▸ 선원최저안전임금지원제도를 포함하는 내항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	해수부장관
12	▸ 선사 경영층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제화 및 구체적·전문적 교육절차 마련	해수부장관
13	▸ 안전관리책임자의 권한 보장 및 책임 이행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해수부장관
14	▸ 선종·항로 고려 등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 실효성 제고	해수부장관
15	▸ 평가기간의 전문성 확보 등 고객만족도평가제도 개선	해수부장관
16	▸ 「해운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16 개정* * 운항관리 업무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임을 명시	해수부장관
17	▸ 내항여객선사 자체 안전관리 수준 강화를 위해 여객선 안전등급 평가 제도 등 도입	해양수산부
18	▸ 내항일반선 분야 해사안전 감독관 인원 확충 등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해수부장관
19	▸ 「유선및도선사업법」 개정* * 선사 내 안전관리자 지정, 유·도선 안전감독관제도 도입 등	행안부장관 해양경찰청장
20	▸ 유·도선 선박건조지원제도 개선	행안부장관
21	▸ 세월호참사 조사기구 권고 사항 이행 절차 및 결과 기록 등이 폐기되지 않도록 보존 절차 마련	해수부장관
22	▸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선령을 10년으로 제한	해수부장관
23	▸ 「선박안전법」 개정* * 선박 결함신고제도 관련, 신고주체 특정, 위반시 벌칙부여 등	국회의장 해수부장관
24	▸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실효성 확보 및 신고 절차 개선, 수집된 정보 선사 제공 및 교육 활용 방안 마련	해수부장관
25	▸ 해상 안전을 담보하고 신고자 신변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별도 공익신고센터 설립	해수부장관
26	▸ 조난 현장 구조본부를 지방청으로 지정하는 등 효율적·실질적 수색구조 활동 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27	▸ 수색구조임무조정관을 단일 지휘관으로 지정하는 등 명확한 지휘·조정체계 확립	해양경찰청장
28	▸ SAR 안전감독관 운영 법적 근거 및 구조본부 운영 점검 기능 강화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29	▸ 모든 구조본부 상황실 내 세계해상 조난과 안전제도에 따른 통신설비 설치·운용 및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해양경찰청장
30	▸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등 일률적·정기적 해양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31	▸ 수색구조 지휘관 대상 정기 교육 실시 등 지휘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해양경찰청장
32	▸ 구조 자원 연계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수색구조 민·관·군 간 협력 강화	해양경찰청장

2-1	세월호참사 관련 공식 사과 등	(1) 대통령

□ 권고 내용

○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로 인한 국민 희생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과 진상규명 방해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가 개별 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뤄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또 재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을 천명하고 관련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향후 계획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1) 국정원장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적폐청산T/F」를 구성하여 세월호참사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규명을 실시하였으나('17.6~12),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 불법행위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음

○ 검찰 세월호 특수단('19.11~'21.1)도 국정원의 불법사찰·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하였으나, 무혐의 처분('21.1.19)한 바 있음

○ 특히, 「사참委」 역시 국정원의 적극적 협조(자료 제출·직원 면담 등) 아래 불법사찰·조사방해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19.4~'22.2)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 없이 종결한 바 있음

□ 향후 계획

○ 국정원 자체 조사는 물론 수년에 걸친 검찰 수사와 「사참委」 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행위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이에 따라 추가 수사감사 및 고발 징계 등 조치 필요성은 없어 보임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2) 경찰청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02-3150-0472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사참위는 정보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하였으나, 인력부족, 경찰청의 '자료 부존재' 회신 등으로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경찰청 차원의 추가적인 독립조사를 요구

* (정보국 입장) 당시 정보경찰은 사회질서유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연락과 같은 ①구조활동 지원 역할과 ②사후 피해회복 등 국민안전 관련 정보활동을 수행했다는 입장

- 세월호참사 당시 작성된 정보보고서는 모두 파기되어, 추가조사를 통해 세부내용, 첩보출처, 보고경로, 활용결과 등 사참위 조사결과 이상의 내용을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3) 국방부장관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실 02-748-6522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법제처장 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18년 「기무사 의혹 軍 특별수사단」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실시*하였음.

* △기무사, 보안연구소 등 총 8회 압수수색(21곳 33개소), △총 110여명에 대한 총 129회 소환조사, △E-mail 등 전자정보 약 60여만 개 파일(700GB) 분석을 실시

- 당시 610 부대장 등 총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함.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4) 국무조정실장

국조실 청렴법무팀 044-200-2845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국무조정실 대상 현장수사 및 조사에 성실히 협조('20.5.13)

- 특수단 현장 조사 결과 관련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특수단에서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관련 혐의자 기소('21.1) 시 해당사항 없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5)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감사담당관 044-200-5034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해양수산부 차원의 자체감사를 실시('17.9~12)

*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 여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 작성 여부 등

○ 자체 감사결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종결 및 조사활동 방해 의혹 문건* 확보 등 업무방해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조치 완료(검찰청 서울동부지검, '17.12.15)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15.1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임 장·차관 기소('18.2.19, 서울동부지검)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6)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 044-205-1169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세월호특조위 설립 방해 등 의혹 관련,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조사 실시 등 旣 조치 완료('20)

- 행안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 후 형사입건 없이 종결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7)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안전예산과 044-215-7434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검찰 세월호특별수사단 조사 실시 등 旣 조치 완료('20)

※ 기재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참고인 조사 후 무혐의로 종료되었기에 추가 조사 불필요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8) 법제처장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044-200-6553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법제처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함) 구성 및 활동 당시, 관계 부처에서 요청하는 일부 법적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였을 뿐임

- 또한 권고 대상인 다른 부처의 경우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법제처는 수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으므로 별도로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계획

○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 별도의 조사 또는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사 또는 감사 실시 예정

2-2	불법사찰 및 조사방해에 대한 독립조사 등 실시	(9) 인사혁신처장

인사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 044-201-8144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대검찰청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서 인사혁신처 관련 부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음('21.1.19)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3 「국가공무원법」 등에 불법 부당 명령 거부권 규정 (1) 인사혁신처장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4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인사혁신처장**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에 따른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을 받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공무원이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공무원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의견진술권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 의원발의안 2건*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22대 국회 개원으로 폐기

* 기동민의원안('20.6.19), 전용기의원안('22.4.12)

※ 참고로, 지난 20대 국회에 관련 내용의 정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당시 상임위 논의 결과 보류('18.3.23)

□ 향후 계획

○ 국가공무원법 개정 재추진

2-4	기록물 고의 반복해 미등록한 경우, 제제 및 처벌 위한「공공기록물법」등 개정	(1)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042-481-622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을 고의로 반복해 미등록 한 경우를 제재하고 처벌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공공기록물법 상 기록물 등록은 모든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이며,

○ 각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 및 시정 조치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5 공무원 교육과정에 '세월호특조위 방해사건' 추가 (1) 인사혁신처장

인사처 인재개발과 044-201-8224

□ 권고 내용

○ **인사혁신처장**은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세월호특조위 방해사건'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추가해, 그 위법성과 부적절성 등을 교육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매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통보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같은 공직가치 교육을 신규자 및 승진자 등 직급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 및 시책교육에 교과목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안내

○ '24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통보 시 공직가치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부처 및 교육훈련기관에 안내 완료('23.11.24.)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6 피해자 자료제공 및 이에 필요한 제도 등 마련 (1) 국정원장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국방부장관·경찰청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찰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제도·절차 등을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자료 제공)** 당사자 본인의 정보공개 청구 등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고 있음

○ **(법령·제도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소송·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정보공개법 등

□ 향후 계획

○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 예정

2-6 피해자 자료제공 및 이에 필요한 제도 등 마련 (2) 국방부장관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실 02-748-6522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국방부장관**·경찰청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찰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제도·절차 등을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자료제공)** 현재까지 자료제공 요구는 없었으며, 개인 또는 집단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 요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제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 **(법령·제도·절차 등 마련)**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배상법·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소송,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23. 2.1.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 및 청해진 해운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 228명이 2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국군기무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위자료 인정됨(친부모 500만원, 기타 피해자 300만원 또는 100만원)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6	피해자 구제 위한 자료제공 및 필요한 법령·제도 등 마련	(3)경찰청장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02-3150-1430

□ 권고 내용

○ 국정원장·국방부장관·**경찰청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찰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제도·절차 등을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자료 제공)** 당시 작성된 정보보고서 등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되어 존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임

* 견문 수집 및 처리 규칙

○ **(절차 등 마련)**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각종 소송,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정보공개법 등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7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국가기록원 이관	(1) 국정원장

□ 권고 내용

○ **국정원장**은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힐 증거를 보존하는 한편, 불법사찰의 피해자가 입증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제공하기 위해,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약 68만 건 전체(목록 포함)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국정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 정한 기록물 관리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자료를 관리 중임

* 제19조의2 무단 은닉 등 금지, 제27조 폐기 절차 등

○ '세월호' 키워드가 포함된 국정원 생산 자료 대다수가 참사와는 무관한 통일·외교·안보 분야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법」이 정한 이관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록물법」(제14조)은 통일·외교·안보 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자체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同法 시행령이 정한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 예정

2-8 불법사찰 방지 위한 법률 등 재정비, 독립 감찰기구 도입 (1) 국정원장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 장관은 정보활동의 객관적 목적을 달성하고, 기관 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제공을 제한하며, 사찰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입증책임을 정보기관에서 지도록 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을 법적·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운영원칙·정보활동지침을 재정비하는 한편, 독립적 감찰기구 등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법률 등 재정비)** Δ「국가정보원법」 개정('20.12) Δ「정보활동기본지침」 제정('21.3.5)을 통해 준법 정보활동 기반 마련

* 수집된 정보의 직무 외 용도 사용은 금하고 있으며, 부서별 업무환경에 맞춰 직무수행 원칙・범위・절차 등에 대한 별도 지침 등도 제정・운영 중

○ **(독립 감찰기구 도입)** 감찰부서에 독립적 직무감찰 권한 부여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8	불법사찰 방지 위한 법률 등 재정비, 독립 감찰기구 도입	(2)경찰청장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감사담당관 02-3150-1430, 0472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 장관은 정보활동의 객관적 목적을 달성하고, 기관 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제공을 제한하며, 사찰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입증책임을 정보기관에서 지도록 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을 법적·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운영원칙·정보활동지침을 재정비하는 한편, 독립적 감찰기구 등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규정 재정비)** 「경찰관 직무집행법」('20.12) 개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1.3)·「정보경찰 활동규칙」(훈령, '19.1) 등 제정을 통해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칙과 한계 설정

- **(조직 신설)** 본청 치안정보국에 '준법지원계'*('18.7)를 신설, 현장 점검·교육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준법의식 제고

* 현장 정보활동에 대한 적법성 점검과 행정지도 및 사안에 따라 사실조사와 징계·수사 의뢰도 할 수 있어 부적절한 정보활동에 대한 실효적 조치 가능

○ **(독립 감찰기구 도입)** '10년부터 자체감사기구의 장인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함으로써 자체 감사·감찰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 감사관실 직원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직 공모 및 적격심사를 통해 독립적으로 선발 중

- 특히,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 제도를 도입('19.5)·운영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실시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8 불법사찰 방지 위한 법률 등 재정비, 독립 감찰기구 도입 (3) 국방부장관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실 02-748-6522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장관**은 정보활동의 객관적 목적을 달성하고, 기관 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제공을 제한하며, 사찰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정보기관에서 지도록 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을 법적·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운영원칙· 정보활동지침을 재정비하는 한편, 독립적 감찰기구 등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조직해체)** 정치개입 논란 부서인 기무사 융합정보실을 해체('18.9월)

○ **(법제화)** **【참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개정을 통해,

- 3不(①정치개입, ②민간사찰, ③특권의식) 조항 신설·유지하고 있으며('18.9월~),

*「국군방첩사령부령」개정('22.11.1.) 이후에서 3不 원칙 지속 유지 중

-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독립적 감찰부서 운영)** 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의 독립적 감사권 보장 노력

- 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제도적 보완을 완료함

* '18.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 이후 현재까지 1명의 검사, 3명의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이 감찰실장으로 보직되어 임무 수행 중

* 또한, 감사원 소속 4급 공무원을 감찰지도관으로 보직·운영하여 독립성 강화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참고】「국군방첩사령부령」 中 불법사찰 금지 관련 조항

○ **제3조(기본원칙)**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3.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남용하는 모든 행위**
4.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9	체계적·지속적인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1) 국무조정실장

국조실 세월호지원단 피해지원과 044-200-6304

□ 권고 내용

○ **국무조정실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의 총괄역할을 강화하고 전체 피해자 파악 및 장기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세월호참사 피해지원이 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세월호지원단의 총괄 역할 강화)** 현재 피해지원·추모사업 이행상황 점검, 관련 기획·조정, 관계기관 협업 지원 등을 旣 수행 중

* 안산·진도 등 피해지원·추모사업 현장방문, 현안별 관계기관 협의·조정, 가족단체-관계부처 간담회 정기 개최(연2회) 및 유가족 의견수렴·소통(수시) 등

○ **(피해자에 대한 장기지원계획 수립)** 「분야별 피해지원 세부 추진계획('15.4)」 旣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

* 18개 피해지원대책 중 생활지원금·긴급복지 지원 등 8개 대책 추진 완료

□ 향후 계획

○ **(세월호지원단의 총괄 역할 강화)** 향후 피해지원·추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체 등 운영

○ **(피해자에 대한 장기지원계획 수립)** 공동체 회복사업 등 10개 중장기 지원대책 지속 추진

* 피해지역(안산시·진도군) 경제 활성화, 안산 트라우마센터 운영,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등 10개 중장기 지원대책 추진 중

2-10 「세월호피해지원법시행령」의 지원금 지급 기간 개정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보상지원과 044-200-6281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월호참사 생존자의 치료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상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부상, 질병의 치유 시까지'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고영인 의원 외 73인) : '23.3.23

○ 농해수위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 '24.2.1.

○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4.5.28.

○ 임시국무회의 의결 : '24.5.29.

○ 공포 : '24.6.4.

= **주요 개정사항**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의료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신체적피해	• (시행령) **지원기간**이 **2024년 4월 15일까지**로 규정 - 신체적 피해(제19조) - 정신적 피해(제21조)	• 지원기한 **법에 명시** (5년 연장/ 2029년 4월 15일까지)
	정신적피해		

□ 향후 계획

○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지원금 계속 지원 : ~'29.4.15.

2-11	내항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선사들의 구조적 운항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선원최저안전임금지원제도를 포함하는 내항여객선 안전공영제*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 내항여객선의 안전 운항 담보 및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선원안전임금 지원, 선박 수리 및 운항 관리 지원, 선박수리비, 운항관리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 이행 현황

○ 국가보조항로 공영제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2.9~'23.4)

-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선원 처우 개선*, 역량강화, 선박 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포함하여 국가보조항로 공영제 도입방안을 검토 중

* 다만 국가보조항로는 선원임금을 국가가 전액 보조 중이며 일반 내항여객선원 평균 임금 대비 높은 수준인 바, 주로 원격지 숙소 확충 및 근로시간 개선방안에 집중

○ 국가보조항로 운영을 기관위탁(공영제)하기 위한 방안 수립('23.9)

○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 담보 및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2년 연속 적자 항로 등 안전운항 지원이 필요한 항로를 대상으로 선원인건비, 선박수리비, 안전관리비 등 결손액을 국가가 지원 중

- 또한 내항여객선 안전이라는 공익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운항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고 지원('23년 정부지원율: 51.5%)

○ 국가보조항로 공공위탁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 대응('23.12~)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23.12), 서삼석의원 대표발의('24.1)

□ 향후 계획

○ 국가보조항로 운영방식 개편 지속 추진

2-12	선사 경영층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등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사의 경영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고, 해양 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시 사업주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절차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해사안전법」 제58조 및 「해운법시행규칙」 제15조의12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 및 운항관리자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하도록 규정

- 또한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21조는 '선박안전운항요령, 여객 및 화물의 안전관리,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의 조치, 과적과승 방지 및 복원성 등 여객선 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기 1회 이상 사업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선원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규정

○ 「해사안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실생활 중심의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국민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확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주도 해양 안전교육 등 실시

*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 수립(5년 주기)

□ 향후 계획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 관련 표준운항관리규정* 개정('24)

*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 준수 의무

2-13	안전관리책임자 권한·책임 근거 마련 등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를 재검토해 안전관리책임자의 권한 보장과 책임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항관리규정 이행에 필요한 기록 관리, 내부 심사 등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안전관리책임자의 권한 보장과 책임 이행 근거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을 「표준운항관리규정*」 제10조에 규정 완료

*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 준수 의무

○ 운항관리규정 이행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권한에 관한 교육내용 추가토록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21.7)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4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 개선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선원정책과 044-200-5745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를 재검토해 여객선 선장별 상이한 선종·항로 등을 고려한 적성심사 내용을 담도록 보완하고, 세부 항목 및 평가 기준 등을 신설해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권고 내용을 반영한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매뉴얼' 개발·배포('15.9.)

-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 및 평가 기준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

○ 권고 내용을 반영한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시행('23.7)

- 적성심사의 선종·항로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성심사 위원에 해당지역 항로 및 여객선 전문가인 '운항관리자'를 포함

□ 향후 계획

○ 해당없음

2-15	「해운법」상 고객만족평가제도 개선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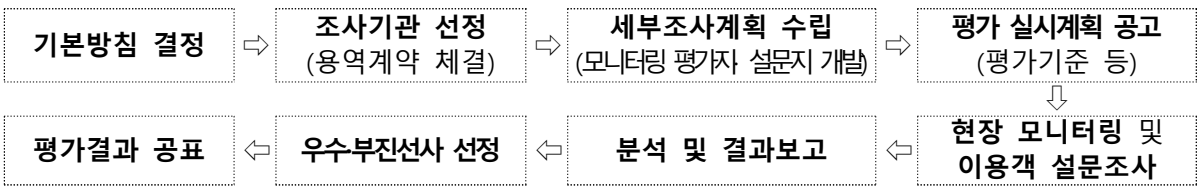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고객만족도평가 제도를 재검토해 서비스 부진 선사나 중·하위권 선사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제도의 홍보 활성화, 고객만족도평가제도 결과 정보 등의 접근성 제고 방안, 세월호참사로 강화된 안전 점검 관련 모니터링 평가 조사원의 교육 강화, 평가위원의 관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추진 계획' 수립('22.12)

<평가 절차>



○ 여객운송사업의 이용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2회), 설문조사(1회) 등을 실시할 민간조사기관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기술평가 등 실시('23.1~3)

* (평가 기간) '23.3~'23.11(9개월), (수행 기관) 한국리서치

○ 권역별 선사 설명회(4.5.~13), 누리집 공고(4.26) 및 보도자료 배포(4.28)를 통한 제도 홍보, 승선 모니터링 평가 조사원 대상 사전 승선교육(5.16.~18)

○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안전 환경, 시설 관리 등 평가 실시(5월~11월, 선박 136척 및 이용객 4,113명 대상)

- 여객선사별 평가 결과를 언론 및 누리집 등에 대국민 공표(12월)

□ 향후 계획

○ 내항여객항로 운송사업자 선정 시 부진선사에 감점 등 불이익 조치

○ '25년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격년제 시행중) 실시('25년 1분기~,)

2-16 「해운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 비용을 여전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된 법조항이 운항관리자 업무의 독립성 저해 요소로 확인되는 바, 「해운법」 제2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16은 법령을 개정해 운항관리 업무가 선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가 되도록 명시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4.3)에 따라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 결정**

*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관계부처 합동 / '24.3.27.

** 예산 조정 등을 위해 폐지 대상 부담금은 '25년부터 시행 예정

□ 향후 계획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를 위한 **「해운법」 관계법령 개정** 추진('24.下)

2-17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3

□ 권고 내용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적절한 규제 기능을 갖춰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내항 여객선의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여객선 안전등급을 평가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 내항여객선사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 소관 변경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양수산부

□ 이행 현황

○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적절한 규제 기능을 갖춰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1조의2에 따라 여객선 안전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양사고를 야기한 여객선에 대해 선박안전도 정보를 공표하는 등 내항여객선사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선박별 선박 검사 결과, 해양 사고 이력, 안전규정 위반 이력, 운항관리규정 심사 결과 등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활동 평가를 포함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격년 시행하고(「해운법」 제9조), 평가 결과를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등 정책지원 선정 시 활용 중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8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5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롭게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제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확인된바, 내항일반선 분야에 해사안전감독관의 인원을 확충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양사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어선 분야에 감독관제도 도입과 해양수산부 관리 밖 영역에 해당하는 유선·도선 및 수상 레저기구 등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다중이용 선박 분야에도 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에게 해사안전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해 내항여객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선박의 화물에 대한 독자적인 개방검사 권한을 갖게 해 내항선 지도·감독 점검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해사안전법」제58조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은 내항여객선 18명, 내항화물선 20명, 원양어선 2명으로 구성('15년 34명→ '16년 36명→ '18년 40명)

- 원양어선을 제외한 어선에 대한 해사안전감독은 같은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제2항 및 「수상레저안전법」제29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 선박 분야의 안전관리는 해경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도 행안부 및 해경 소관(19번 과제와 동일)

○ 해사안전감독관은 매년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주기적인 전문교육을 받고 있으며, 현재 「해사안전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물 개방 점검이 가능함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 선사가 자체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선사 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관리기관의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가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선 안전감독관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안전관리자" 지정·운영 제도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 업체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직무 범위, 자격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추진경과) '21대 국회 회기 종료('24.5.29.)에 따라 계류 중이던 개정법률안 폐기, '22대 국회 재입법 추진 - 입법예고(5.21.~31.), 국회제출(7.12.)

□ 향후 계획

○ 안전감독관 제도는 안전관리자 지정제도 도입·운영 이후에 성과 분석을 통해 검토 추진

2-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	(2)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835-2549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 선사가 자체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선사 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관리기관의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가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선 안전감독관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

- **(개정 내용)** '안전관리자' 지정 및 운영 제도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 **(추진 경과)** 22대 국회, '24.7월 행안부 개정안 발의(정부입법), 8월 현재 행안위 계류 중

※ 개정안 관련 해경청 의견 제출('24. 5.28.)

▸ '20년(21대 국회) 행안부 개정안 발의(정부입법)→ 회기 만료에 따른 개정안 폐기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0 선박건조지원제도 선사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도선 현대화 선박건조지원사업의 지원 방법 재조정 또는 민간금융기관과의 이차보전 관련 사업 협약시 대출 조건, 계약내용 등을 유·도선 사업현황을 고려해 재조정 등을 포함한 유·도선 선박건조지원제도의 선사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노후선박 건조지원을 위한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추진 중('20~)

○ 선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11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행정지원 강화 (5개 협약은행, KOMSA, 조선조합 등)

○ 실질적 건조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제도를 신설·도입**('22.7월)하여 참여율을 제고하였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1 대형재난 선박에 대한 자료 준영구 보존 조치 등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1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월호참사를 조사했던 한시적인 국가조사기구의 권고사항이 갖는 실행력과 이행 여부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의 선박에 대한 자료와 검사 결과등의 기록이 폐기되지 않도록 정부 대행기관과 같은 책임기관의 해당 자료들은 보관 기간의 만료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고, 이행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2조제4~5항

- 해당 권고사항의 주체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립 근거 법령에서 권고내용 이행과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행력과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대형 재난선박의 자료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조치 완료('22.12)

- 선박검사 정부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선박의 검사기록, 검사결과 등에 대한 보존기간을 영구 또는 준영구로 정하도록 조치 완료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한국선급 및 뷰로베리타스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2 외국 도입 선박선령을 10년으로 제한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월호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노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최초 운항 시점 또는 최초 등록 시점과 이후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정기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선령 기준과 상관없이 최초 도입 시 수행되는 정기검사를 포함해 최소 2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의 선령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연안여객선 선박검사는 해외 도입 중고선박을 포함하여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 중

- 선박검사를 통과한 외국 도입 선박에 대해 선령을 10년으로 제한하여야 할 기술적 근거가 없으며,

* 외국의 경우 선령제한 관련 규정이 없고 선박검사를 통해 안전 확보

- 외국 도입 선박에 한정하여 선령 제한 적용 시 수입제한 규제에 따른 국제통상법 저촉이 우려되므로, 중장기 검토 필요

○ 도입 선령을 10년 내로 제한하기보다는 정기 및 중간검사 등의 철저한 검사로 국내 건조 선박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내항여객선의 선령별 검사 종류》

구분	검사종류	검사시기	관련규정
선령 20년 이하	(별도)건조검사	건조 또는 도입 시	선박안전법 제7조
	정기검사	매 5년	선박안전법 제8조
	제1종 중간검사	매 1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선령 20년 초과 25년 이하	정기검사	매 1년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선령 25년 초과 30년 이하	정기검사 +피로강도평가 등	매 1년	
	선박관리평가	매 1년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3	「선박안전법」 개정안 마련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1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 74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 선박 결함신고 제도와 관련, 신고 주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해 동 조항이 선박 안전운항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에 규정돼 있는 신고 주체의 특정 및 위반 시 벌칙조항 등을 참고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선박안전법 개정 완료('15.1)

- 세월호 참사 이전 결함신고의 의무규정이 없었으나, 참사 이후 신고를 의무화*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임

*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 개정('15.1.6)

- 선박소유자·선장·선박직원에 결함 미신고시 벌칙규정(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하여 신고주체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

* 「선박안전법」 제84조제1항제11호 신설('15.1.6)

※ (기존) 선박 결함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벌칙 규정 없음 → (개선)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선박 결함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 규정 신설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4	준해양사고 통보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등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중앙해양안전심판원) (044-200-6140)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의 표준운항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해 준해양사고 통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고 절차를 사용자 편의에 맞는 방식으로 검토·추진하기 바랍니다. 또 수집된 정보를 가공해 정기적으로 선사들에 제공하고 선박 운항 관련자를 교육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표준운항관리규정 개정)** 「선박안전법」의 표준운항관리규정 내 준해양사고 통보 권고 규정(신설안 제28조의2) 마련 완료('23.4.4)

○ **(신고절차 개선)**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운영('21.12~)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반응형웹) 內 준해양사고 통보 게시판 활용

○ **(정보제공과 교육 활용)** 선박운항자 등이 통보한 준해양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훈사례를 선정·공표(매분기)하고 선사·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중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5	별도의 공익신고센터 설립	(1)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1

□ 권고 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재 선박의 기계적 결함과 선박 소유자·선장·선원 등의 의무와 관련된 신고는 해수부 산하 지역 항만청 등에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능동적 신고가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상 안전을 담보하고 신고자 신변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공익신고센터를 설립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신고자 공개금지 규정과 온라인 신고센터 마련으로 능동적 공익신고 제한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별도 공익센터 설립할 필요성이 낮음

-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신고자 정보 공개 금지 법령 및 처벌 : 「선박안전법」(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공익신고자 보호법」(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별도 공익신고센터 설립에 갈음하여 해양수산부 온라인 결함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방문 또는 서면 제출 등 접수창구를 다양화하여 누구나 쉽게 결함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 중

  * 결함 신고자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21.9~)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6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수색구조 활동방안 마련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345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대응 시 구조본부의 중복된 비상가동에 따른 지휘혼선을 최소화하고 구조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및 지방 관서의 특성을 고려해 조난현장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총괄할 구조본부를 지방청으로 지정하고 본청과 해경서는 지방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수색구조 활동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수색구조 활동방안 마련

- **(상황처리 체계 개선)** 중요상황 발생 시 광역구조본부(지방청장) 중심의 상황 대응과 해경서는 지방청을 지원하는 상황처리 개선방안 시행

- **(규칙 개정)** 광역-지역구조본부의 명확한 임무 및 역할 분담과 광역구조본부 중심의 상황 대응체계 정립을 위한 관련규칙* 개정

  *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362호)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7	수색구조 활동의 명확한 지휘·조정체계 확립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345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법」과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수색구조 활동의 총괄·조정을 위한 수색구조 임무조정관을 단일한 지휘관으로 지정하는 등 명확한 지휘·조정체계의 확립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지휘·조정체계 재정립)** 「수상구조법」 제17조*는 수색구조 현장 지휘는 구조본부의 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제17조(현장지휘) 조난현장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행함

- 개정 전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구조본부장은 구조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관이 수색구조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

* 제5조(비상가동 조직 및 사무) 구조본부장 : 구조본부업무 총괄
조정관 : 수색구조업무 총괄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8 SAR 안전감독관의 구조본부 점검 기능 강화 방안 마련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345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SAR 안전감독관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SAR 안전감독관에게 구조본부 비상가동 시 구조본부를 비롯한 다른 구조본부장이 지휘권을 인수하지 않은 채 현장지휘에 관여하는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구조본부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기능의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SAR 안전감독관의 구조본부 점검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SAR 지도감독 계획수립)**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매년 구조조정본부 SAR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 시행

  * 제4조(중앙구조본부의 구성·운영) 제3항제8호 광역·지역구조본부의 지휘·감독

- **(현장지휘 사례 조사)** 구조본부 비상가동시 상급구조본부장의 지휘권 미인수 현장 지휘 사례 조사 등 SAR 안전감독관 기능 강화를 위해

  ❶ 「23년도 구조조정본부 SAR 지도·감독 계획」의 「구조조정본부 점검」 항목에 지휘권 미인수 현장지휘 사례 조사 항목 추가 반영

  ❷ 매년 구조조정본부 SAR 지도·감독 계획 수립시 점검 항목 정례화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9 실시간 육·해상통신망 체계 구축 방안 마련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032-835-2401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본부와 현장 출동세력, 조난선박 간 정보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상호간 직접 교신하기 위한 통신망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구조본부 상황실에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통신 설비를 설치·운용하고, 상황실 통신망을 지능형 해상교통관제시스템, VTS통신망과 연계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 시 모든 구조본부가 조난 선박과 직접 교신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① **(정보전달체계 강화)** '현장영상정보전송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영상을 상황실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전국 상황실 및 현장세력 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함

- 또한, '상황관리시스템(문자망)' 및 '상황전파시스템(상황보고서)'으로 상황정보를 전국 상황실 및 현장세력 간 공유 중에 있음

② **(통신망체계 구축)** 해양경찰청은「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로서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VHF, SSB 및 위성조난 수신을 위한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수상구조법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에 따라 종합상황실(국제안전통신센터 및 위성조난 통신실)에서 24시간 청취 및 조난선박과 직접 교신이 가능하며,

- 경비함정 등 주요 구조세력에 VHF 및 SSB 무선통신설비가 구축되어 있어 현장 구조세력-조난선박 간 직접 교신이 가능함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는 '해상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통신망으로 국제협약에 따른 조난상황 시 활용되는 통신망에 해당되지 않으며, VTS는「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VHF를 사용 중에 있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30 해양 수색구조 역량 강화 위한 교육 방안 마련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405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색구조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해경의 일률적이고 정기적인 해양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구조·구급직별 전문교육)** 전문 구조대원의 구조역량을 등급화하여 등급별 구조 전문교육 및 구조 상황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20~)

* 최근 3년간('20~22년) 전문교육 14개 과정 운영, 1,111명 교육

○ **(수색구조 담당자 교육)** 사무실, 함정, 파출소 등 수색구조 업무담당 대상 주기적 보수교육을 위한 긴급구조교육과정 개설 운영('19~)

* 최근 3년간('20~22년) 긴급구조과정 5개소, 1,702명 교육

○ **(구조대원 자체양성교육)** 일반직원 대상 구조대원(구조직별) 양성교육 과정 신설 운영('16~)

* 최근 3년간('20~22년) 자체 양성과정 26명

○ '23년 구조·구급 교육훈련 기본 계획 의거 매년 정기적인 전문교육 운영 및 확대 예정

- '22년 총 44회, 1,158명 → '23년 총 67회, 1,221명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31	지휘관 역량 강화 위한 교육 방안 마련	(1)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032-835-2238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를 총괄·지휘·조정하는 모든 지휘관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지휘관이 될 수 있도록 지휘관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지휘관 역량 강화 위한 교육 방안 마련

- **(지휘관 교육)** '23년 해양경찰 교육훈련 계획에 「상황지휘과정」반영·시행

▸ 기간 : '23.2.22(수) ~ 24(금), 3일간
▸ 대상 : 총경(승후 포함) 15명
▸ 교육내용: 상황지휘의 이해, 유형별 상황관리(수색구조, 경비·작전, 해양오염방제 등), 사회재난대응정책, 언론대응 기법, 대외 리더십 등

- **(지휘관 역량검증)** 총경·경정 기본교육에 수색구조 관련 교과목을 보강하여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총경은 상황관련 교육 이수여부 등 감안하여 「서장 자격심사」 후 지휘관 배치

※ ▸ 서장 보직 대기자 대상, 1년 1회 심사
▸ 상황관리 및 리더십 등 종합 평가 후 서장 배치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32	수색구조 시 민·관·군 협력 강화 방안 마련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247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 시 민·관·군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은 민·관·군이 보유한 구조 자원의 연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은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가 구조지원단체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민·관·군 구조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①민간 구난업체·해군 보유 구조장비 현황 파악 및 D/B 관리 중이며, 민간구조대원 선박의 실시간 위치확인 가능하도록 통합상황관리시스템에 등록·운용 중('22.12)
②지방청·소속서 주관 수난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중(분기별)

* ('23년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 지방청, 경찰서별 반기 2회 이상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 **(민간구조지원단체 지원)** 해양구조·구난 민간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해 민간구조대원 교육·훈련 위탁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20년 ~)

○ **(법령·제도 정비)**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원수당 인상('23.2월) 및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령」 제정('24.1월)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분야 3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 분야(22개)

연번	권고사항 요약	대상
1	▸ 독립·상설 재난원인조사 기구인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
2	▸ 재난안전법을 기본법과 집행법(안전/재난)으로 분법 추진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3	▸ 국가안전관리계획을 재난관리 중심으로 전환, 안전분야는 부처별 추진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4	▸ 안전정보 연계를 위한 (가칭)국가안전정보위원회 설립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5	▸ 재난피해자를 위한 조직 신설, 지원체계 마련	국무총리
6	▸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등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교육·홍보 강화	국가인권위원장
7	▸ 피해자(가족)에게 수습·수색 정보제공 법제화 등 수습홍보 개선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8	▸ 구호 약자의 범위 법제화 등 재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개선	행안부장관
9	▸ 재난회복 개념 명시하고 무형의 피해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복구 개선	행안부장관
10	▸ 동원·봉사인력의 치료지원과 보상 강화를 위해 재난법, 의사상자법, 수상구조법 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 명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등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복지부장관 해양경찰청장
11	▸ 재난 추모사업 법제화 및 매뉴얼 마련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12	▸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지원	행안부장관
13	▸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매뉴얼 등 표준절차 개선	행안부장관
14	▸ 선박사고시 사상자 육상인계지점의 지휘공백 해소 방안 마련, 관계기관 역할분담과 협력절차를 표준화하여 매뉴얼에 반영	해양경찰청장 해수부장관 행안부장관
15	▸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매뉴얼 마련	행안부장관
16	▸ 심리적 응급처치 명시, 매뉴얼 개선 등 재난심리지원 강화	행안부장관
17	▸ 재난피해자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정신건강복지법」근거규정 마련	국회의장 복지부장관
18	▸ 손해배상시 남녀 형평성, 만12세 이하 성년 후 권리를 고려해 배상금 책정	법무부장관
19	▸ 교육기관별 구체적 재난대응업무 및 피해지원 체계 마련, 교육기관 역할 개선	교육부장관
20	▸ 재난안전법에 재난피해자 법률지원 규정 신설	국회의장 행안부장관
21	▸ 가습기살균제, 4·16세월호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필요	국가기록원장
22	▸ 참사·재난 및 한시적 조사기구의 기록물 공개·활용방안 마련	국가기록원장

3-1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안전조사과 044-205-6211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독립적인 상설 재난원인조사기구로서 개선 권고 및 권고이행 여부 점검 기능, 피해자와의 소통 기능 등을 확보한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 **(고려사항)** 재난원인조사의 주 목적을 고려할 때, 부처별 조사기구 중심 조사 체계 유지 필요

※ 재난원인조사는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발굴이 주목적으로, 업무 연계성이 있고 제도 개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 소속 조사기구가 주관함이 바람직함

○ **(대안이행)** 재난원인조사의 객관성·신뢰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완료('23.6.27.)

※ 재난원인조사 등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체('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신설

□ 향후 계획

○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 및 민·관 합동조사 지속 추진(계속)

○ 재난원인조사기구 민간 참여 확대 방안 관계기관 협의(계속)

3-1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2) 환경부장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긴급대응반 044-201-7511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독립적인 상설 재난원인조사기구로서 개선 권고 및 권고이행 여부 점검 기능, 피해자와의 소통 기능 등을 확보한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해당 없음

□ 향후 계획

○ 주관부처인 행안부에서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추진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음

3-1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 044-200-6262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독립적인 상설 재난원인조사기구로서 개선 권고 및 권고이행 여부 점검 기능, 피해자와의 소통 기능 등을 확보한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해당 없음

□ 향후 계획

○ 주관부처인 행안부에서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추진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음

3-2 「재난안전법」을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분리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가진 법 체계적·내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법을 기본법인 '안전기본법'과 집행법인 '안전관리법' 및 '재난관리법'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 '해외재난관리체계 조사·분석을 통한 재난안전법 법체계 개선 정책연구('22.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재난대응기관간 협력지원체계 구체화를 위한 법제연구('23.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재난안전법 체계 개선과제를 세부과제로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 법령 정비 추진 중

* (종합대책 과제 30) 재난안전관리 법령의 체계적 정비

- 「재난안전 법제 정비 TF」 운영, 소방·경찰·해경청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 재난안전법(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 인파사고 명시) 등 법률 17건 개정 완료

○ 재난안전법 및 관계 법령 전반적 체계 개선을 위한 TF 운영

□ 향후 계획

○ 「재난안전 법령체계 개선 TF」 운영 ('24.하반기)

3-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1)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안전정책팀 044-200-2342

□ 권고 내용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재난관리 중심 계획으로 전환하고, 안전관리분야는 각 부처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5~'29년)을 기후위기와 새로운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포함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24.6.28)

*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 관리 권한과 책임 명확화를 위해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24.7.16)

□ 향후 계획

○ 2025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24.10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승인·확정

3-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2)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안전사업조정과 044-205-4171

□ 권고 내용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재난관리 중심 계획으로 전환하고, 안전관리분야는 각 부처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5~'29)은 기후위기와 새로운 대형·복합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수립('24.6.28.)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을 지속 제고하겠음

□ 향후 계획

○ 각 부처별 2025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24.10.)

3-4	(가칭)국가안전정보위원회 설립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안전데이터과 044-205-4466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 연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칭)국가안전정보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6)

- 효율적인 안전정보* 수집·공개·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신설

* 재난유형별 사고발생건수,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등급), 지역별 재난관리평가 결과 등

○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개최(8회)

○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로 확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3.8.8.) 및 운영규정 신설('23.9.8.)

□ 향후 계획

○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개최('24년 하반기)

3-5 재난 피해자 지원 조직 신설 및 지원체계 마련 (1)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재난안전관리과 044-200-2348

□ 권고 내용

○ **국무총리**는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직 신설,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의 수습,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추진

- 행안부 장관이 중대본의 본부장이 되어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조정하나,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 필요시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권한 행사

* ▲코로나 19('20.2.23~'23.5.31) ▲이태원 참사('22.10.30.~12.2.)

○ 이태원 참사('22.10.29) 발생 시에도 중대본 의결을 통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성('22.11.9)하여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행안부)'을 설치('23.3.4~)하여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재난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 재난 발생 시 적절한 조직과 인력운영 및 지원에 대한 검토 필요

- 향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대형 재난 발생 시 중대본 의결을 통해 피해 규모 등에 따른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3-6 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 방안 마련 등 (1)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 02-2125-9946

□ 권고 내용

○ **국가인권위원장**은 재난 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실태를 조사·연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완료)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 인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인식조사 진행(2022. 11. 문체부 주관),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법제 현황 및 사례연구)(2024. 5.~12. 現 진행중)

  ※ 문화체육관광부 혐오표현 인식조사: 전국 거주 만 15세 이상 남녀, 1,209명 실시, 응답자의 14.5% 오프라인에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의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 온라인 24.4% 경험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에 재난피해자 혐오대응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권고하는 것을 결정(2023. 3)하고,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정문 발송 완료(2023. 5). 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안전부 회의 참석(2024. 3.) 재난피해자 권리에 기반한 기본계획 수립 요청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2022. 8.) 10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핵심과제 3)를 포함.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2023. 6.)에서 특히 10. 29 이태원 참사, '신림동 일가족 폭우 침수 사망 사건' 등의 사례와 관련 논의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2023. 6. 26.)

- 재난·참사 피해 유가족 등과의 간담회 개최(2023. 3.),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포함하여 혐오표현 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2023. 8.) 및 회의 개최(2023. 9.),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토론회(2023. 10. 국회의원 권인숙, 용혜인, 강은미 공동주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2023. 11.),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포럼(2024. 5.), 재난·참사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2024. 5.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 송재호, 권인숙, 문진석, 윤건영, 이형석, 이해식, 임호선, 최기상,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공동주최) 개최, 국가인권위원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 면담(2024. 7.)

○ 교육 및 홍보 강화

- 위원회가 운영하는 혐오표현 예방 교육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실태와 예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

연도	과정명	대상	특강명	시간	횟수
2024년	노인 혐오차별 예방, 인권토크	일반시민	노인인권토크 (*재난에 취약한 집단)	2시간	3회
2023년	지자체 인권담당자 인권역량 과정	전국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 실무자	인권이슈 차별금지와 혐오표현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2시간	1회
	아동정책 공무원 인권리더십과정	아동정책 담당 공무원	혐오와 차별	2시간	1회
	노인 인권교육가 역량강화 연수과정	노인 인권 교육가 역량강화 연수과정	노인 차별	2시간	2회
	2023년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	전국 초중고 학교 교장, 교감	평등법의 이해	2시간	13회
			학교 내 혐오차별 사례 발표 및 토론	4시간	8회
	2023 인권강사 양성과정(기본1)	신규 인권강사 과정 지원자	평등과 차별	2시간	2회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2시간	2회
2022년 (10.1.부터)	2022 인권강사 양성과정(심화)	신규 인권강사 과정 지원자	혐오와 차별	2시간	2회
	2022 인권강사 역량강화 과정	위촉 인권강사	사회갈등과 불평등	2시간	4회

- 인권적 관점에서의 재난의 이해, 피해자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과

시민의 연대(혐오표현 예방 포함) 등을 위한 인권 교육 교재 ‘재난과 인권’을 개발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2024.), 관련 기관 등에 교재 보급, 인권교육 운영 예정(2025.)

-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차별, 혐오 문제”등을 공모주제로 하여 ‘2023년 인권공모전’ 추진, 당선작을 교육, 홍보자료로 제작하여 배포. 2024 3+4월호 인권잡지 ‘재난피해자’ 특집 기사 게재, 2024년 인권옹호자회의 ‘재난과 인권’ 주제 토의

○ 언론과 IT기업의 자율규제 지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예방 노력 요청(2022. 11.)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담당자 등 온라인 혐오표현 예방 간담회를 상호 협력 방안 논의(2023. 8.),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 차별과 배제를 넘어 세션 운영(2024. 5.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적용 사례 발표 등을 통해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역할 강조), IT 기업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보완 작업 지원(2024. 9. 예정, 카카오)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7	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방안 마련 등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안전정책총괄과, 재난대응정책과, 수습지원과 044-205-4120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참사와 그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및 그 조력자가 '재난참사와 그로 인한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원인 및 상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획득하며,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등에 피해자 및 그 조력자가 '재난참사의 발생부터 사후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난참사 발생원인규명부터 후속 대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열람하고 적시에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법」 등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행정적 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재난참사의 발생부터 사후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난참사 발생원인규명부터 후속 대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매뉴얼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임무, 전담체계구성 등을 추가하고, 「재난수습 홍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피해자 중심의 재난수습홍보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재난현장에 중앙부처 수습지원단을 파견토록 규정을 신설(「재난안전법」 제14조의2)하고, 정례브리핑을 통한 정보 제공, 피해가족 전담공무원 지정 등 재난피해자 지원사항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시행('14.12.)

- 지자체장이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토록 규정을 개정(법 제16조제3항)하고, 현장민원실 운영, 의료·장례지원 등 재난피해자 지원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시행

  * 행안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수습 길라잡이"(2019.)

○ 재난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행동매뉴얼 강화

- 재난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행동 매뉴얼 개선사항 마련('22.11월)

○ 대규모 재난시 신속한 피해자, 유가족 지원과 재난수습을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지침*을 통해 지원사항,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권고사항의 취지를 달성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부상자·유가족 지원 일대일 맞춤형 행정서비스)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8 구호 약자 명시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책 개선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구호과 044-205-5332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구호 약자 범위를 명시하고 안전취약계층의 구호 및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총괄부서 역할을 강화하는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책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 범위에 「재해구호법 시행령」(이하 구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호약자**'가 일부 포함됨

* 제3조(정의)9의3호 : "안전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 제3조의2(구호약자) :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기타 신체질환자 등

○ 또한, 재난법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재해구호 관련 지침 등에 반영하여 실시 중

- 재난법의 '안전취약계층' 중 재해를 입은 이재민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일 경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우선 지원***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4조 : 구호약자,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자 등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에도 **고령자,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한 개별구호물품 지원 및 별도의 휴식 및 놀이공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등 안전취약계층의 구호 및 지원내용 포함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9	재난회복 개념 명시 및 무형의 피해 기준 추가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복구지원과 044-205-5318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피해지역의 실효적인 회복을 위해 「재난안전법」상 재난회복의 개념을 명시하고,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따른 무형의 피해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항목에 추가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난안전법」 제2조(기본이념) 및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재난 피해에 대한 일상 회복' 개념을 명시한 일부개정법률안 개정('23.5.16.) 및 시행('23.8.17.)

○ 재난피해 범주에 **무형의 피해도 포함하는 사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로 추진 완료**('23.2.~.12.)

*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 개편연구」('유·무형의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내용 포함)

- 지역사회 회복, 지역 상업 회복*, 자연환경·문화재** 측면의 회복 등 **무형의 피해까지 포함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중**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상업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지원 신설('23.7.25.)**

** **문화재 복원 등은 자연재난 복구 기준을 준용**하여 복구계획 수립 중

□ 향후 계획

○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마을기반 조성 지원기준 마련(~'24.10.)

3-10 정신적 질환 등 구호인력의 치료지원 및 보상 강화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자원관리과 044-205-5278

□ 권고 내용

○ 국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해양경찰청장은 재난 시 동원·봉사 인력의 치료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재난안전법」·「의사상자법」·「수상구조법」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을 명시하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치료비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며,「수상구조법」의 보상금 준용 법률을 변경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3.12.26.), 시행('24.6.27.)

- 부상에 정신적 손상을 포함하고, 치료비 지원근거 마련

※ 재난안전법에 자원봉사 인력 치료비 지원 근거규정이 있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치료비 지원 가능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10 「의사상자법」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 명시 (2) 보건복지부장관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4

□ 권고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시 동원·봉사 인력의 치료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상자법」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현행 「의사상자법」에 의한 의상자 부상의 범위에 "정신적 질환"을 이미 포함하여 판정 중

- 구조활동과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제1급~제5급으로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 중

- 또한, 부상 정도가 악화됐을 때는 언제든지 부상 등급 변경 신청 가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급	부상의정도
제1급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3급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4급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	16.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이행 완료)

3-10	정신적 질환 등 구호인력의 치료지원 및 보상 강화	(3) 해양경찰청장

해경 수색구조과 032-835-2147

□ 권고 내용

○ 국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해양경찰청장**은 재난 시 동원·봉사 인력의 치료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재난안전법」·「의사상자법」·「수상구조법」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을 명시하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치료비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며,「수상구조법」의 보상금 준용 법률을 변경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재난안전법」 등 '부상'에 '정신적 질환' 명시, 「자원활동기본법」 내 치료비 지원 근거조항 마련 및 「수상구조법」의 보상금 준용법률 변경

- 「수상구조법」은 「의사상자법」 준용, 정신질환에 보상금과 치료 지원 가능

- 세월호 민간잠수사 정신질환 치료 지원

  * '19~'23 정신의학진료 34건 지원

□ 향후 계획

○ 해당 없음

3-11 국가의 재난 희생자 추모사업 규정·매뉴얼 마련 |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복구지원과 044-205-5318

□ 권고 내용

○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보존과 재발 방지 등 교훈 계승을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가의 희생자 추모사업 규정을 명시하고 추진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정부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 '추모사업' 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지침에 旣마련하여 시행 중('16년)

※ ①「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3호라목(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및 [별표]제2호라목(추모사업 비용 부담기준)
②「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운영 지침」[별표]제2호4·5(정부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실시 요령, 추모사업 실시요령) 등

○ 재난 희생자 추모사업 내용이 포함된 연구 용역* 추진('23.2~'23.12.)

*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 개편연구」('희생자 추모사업 관리방안(가이드라인)' 내용 포함, '23.2.~12.)

○ 정책연구를 통해 추모사업 업무 안내서 마련, 「'24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에 '추모사업 업무 안내서' 반영 예정('24.10.)

□ 향후 계획

○「'24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에 추모사업 업무 안내서를 반영하여 발간('24.10.)

○「재난안전법」상 '추모사업' 법제화는 정책연구 결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종합 고려하여 개정 여부 검토 추진(계속)

3-12 특별재난지역 관련 생활안정자금 형평성 제고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복구지원과 044-205-5318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사회재난 피해자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 거주자가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은 재난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피해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체계가 정비되어 있음

※「재난안전법」제66조제4항 :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또한, 전국 모든 지자체(243개)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및 운용 중으로 특별재난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

*「시·도/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시·도/시·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도/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호(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나먹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생략) 2. 간접지원: (생략) 3. 피해수습지원: (생략)	**제4조(지원기준)**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이하 생략)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13	대규모 재난수습 총괄체계 개선 등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 044-205-5212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수습의 총괄체계를 개선하고 「범정부통합실무반」 운영방안과 피해자 전담지원체계, 피해자보호공간 및 임시영안소 운영 등 지원업무절차를 마련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대규모 재난수습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수습지원단 운영매뉴얼」에 피해자 지원 임무와 역할, 기능 및 지원활동수칙 등을 포함하여 수립 완료('21.9)

-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례적인 브리핑 실시
- 피해자 가족과 전담 공무원을 1:1로 지정하여, 지원 필요사항 파악 및 조치, 동향 파악 등 실시
- 수색 진행 상황 등은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대기실내 상황판 설치
- 피해자 상담을 위한 창구 운영(일반사항, 장례지원, 보험 등)

○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회복 지원,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지원, 임시·합동분향소 설치 등 재난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매뉴얼 지침* 시달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종합개편 계획'을 통해 관계기관 배포('22.12)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14	선박사고 사상자 후속 조치사항 개선 등	[1] 해양경찰청장

해경청 수색구조과 032-835-2147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은 해양 선박사고 사상자 후속 조치 과정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상자 육상인계지점의 현장지휘 공백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상황 단계별·사상자 유형별 후속 조치 명확화 및 관계기관 역할분담과 협력절차를 표준화해「위기관리 매뉴얼」등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사상자 육상인계지점의 현장지휘 공백 문제 해소, 유형별 역할분담과 협력절차 표준화

-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23.9.25.) 등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관련 매뉴얼 반영

* 관계기관 : 해안부(주관), 행수부, 해경 등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14	선박사고 사상자 후속 조치사항 개선 등	(2)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7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은 해양 선박사고 사상자 후속 조치 과정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상자 육상인계지점의 현장지휘 공백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상황 단계별·사상자 유형별 후속 조치 명확화 및 관계기관 역할분담과 협력절차를 표준화해 「위기관리 매뉴얼」 등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현재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법령 등 개정 후 '해양선박사고 표준매뉴얼(재난관리주관기관 : 해수부)'에 반영 예정

* 해양선박 재난대응 정책협의회('22.11.30, '23.3.30 등)
행안부(주관), 해수부, 보건복지부, 해경청, 경찰청, 소방청 등

□ 향후 계획

○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에 반영할 예정

3-14 선박사고 사상자 후속 조치사항 개선 등 (3)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 044-205-6343

□ 권고 내용

○ 해양경찰청장·해양수산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은 해양 선박사고 사상자 후속 조치 과정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상자 육상인계지점의 현장지휘 공백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상황 단계별·사상자 유형별 후속 조치 명확화 및 관계기관 역할분담과 협력절차를 표준화해「위기관리 매뉴얼」등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사상자 육상인계 관련 현장지휘 공백방지와 사상자 유형별 후속 조치 명확화를 위해 행안부 주관으로 「해양선박 사고 표준매뉴얼(해수부 주관, 행안부 승인)」의 개정 방안을 해수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

* 행안부 주관 해양선박 재난대응 정책협의회 개최('22.11.30/ '23.03.30/ '23.09.25.), 협의 완료(~'24.7.17.)

논의안건	논의결과	협의결과
① 사상자 육상인계지점 지휘공백 문제	사상자 육상 인도과정과 인계 시 현장지휘 공백과 기관 간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해당 재난의 범위에 따라 구성된 중대본 또는 중수본에서 총괄·조정 수행	완료
② 대규모 인명사고 상황단계 구분 및 조치	해경에서 수색구조지침서 및 선박사고 표준대응절차와 복지부 관련 매뉴얼을 참고하여 매뉴얼 작성 및 인명구조 활동 실시	완료
③ 사상자 유형별 후속조치 구분	육상인계지점에서의 인계후 1차 구조는 소방청에서 실시하며 이후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주관기관인 복지부에서 후속조치 및 사상자 명단 작성 실시	완료
④ 사상자 및 전체 피해자 명단의 작성 인계 총괄기관		완료
⑤현장 임시영안소 설치 및 운영 절차	임시영안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육상인계지점 지휘 부처와 관할 보건소에서 협의후 추진하며 출입통제와 신원조회는 경찰청에서 추진	완료

□ 향후 계획

○「해양선박사고 표준매뉴얼」의 개정 표준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및 승인 절차 이행, 승인·통보(행안부→주관기관, ~'24.11.)

3-15 체계적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개선 매뉴얼 마련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구호과 044-205-5333

□ 권고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랍니다.(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양 관련 부서 협의)

□ 이행 현황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위한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 (→보건복지부, '23.3.20)

※ 재난발생시 공공 의료기관 및 지역 보건소에서 일시대피자 및 이재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현황 및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 내용과 범위에 대한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

○ '24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안) 의견조회 시 검토요청(→보건복지부, '23.11.6.)

※ 보건복지부에 사참위 권고사항(의료서비스 내용 및 범위 등) 검토요청

□ 향후 계획

○ 위원회 권고 취지가, 의료행위(의사의 진료, 물리치료, 약 처방 등) 및 약품관리(향정신성 의약품 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의료서비스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는 것으로,

○ 의료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협의 및 독려하고,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토록 하겠음(~'25년)

3-16 심리적 응급처치 등 심리·사회적 지원 방안 마련 (1)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 재난구호과 044-205-5342

□ 권고 내용

○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심리적 응급처치를 명시하고 재난상담 활동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포함하는 등 재난 시 심리적 응급처치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바람

□ 이행 내역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심리진단'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업무에 부합하게 '심리적 응급처치'로 개정('24.7.17. 완료)

○ 심리적 응급처치 활동 가이드북 개발('23. 12월), 재난심리 활동가 교육 실시('24. 4월)

○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계획 수립 후 시·도 배포(완료)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 소방청, 해양경찰청 포함(완료)

○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훈련 사전 실시 및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에 인도주의적 활동원칙, 피해자 보호수칙 등 명시(완료)

□ 향후계획

○ 해당사항 없음

3-17 「정신건강복지법」상 재난피해자 실효적 지원 규정 미련 | (1) 보건복지부장관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2

□ 권고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재난 피해자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실효적으로 수행하도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포함 사항에 '재난심리지원' 추가('24.1월 개정)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내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 지역 내 각종 재난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 중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난심리지원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522명 증원('23.)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에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및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추가('24.1월 개정)

○ 또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각종 재난상황에서 심리지원 수행 및 지역사회 트라우마 대응 강화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재난심리지원 현황: 화성 공장화재('24.6), 시청역 차량사고('24.7), 폭우 수해('24.여름) 등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이행 완료)

3-18	군미필·아동 관련 배상금 형평성 개선안 마련	법무부장관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7

□ 권고 내용

○ **법무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시 군미필 남성의 일실수익 산정에서 여성 또는 군 면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배상금을 책정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은 향후 성장 과정의 후유장해와 성년 후 권리를 고려해 배상금을 책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 **(군미필 남성)** 현행 국가배상액 산정 방식이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완료('23.10.31. 시행)

○ **(후유장해)** 법원은 '후유장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현행 법령 하에서도 만 12세 이하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3-19 재난대응·피해지원·추모 등 교육기관 역할 개선 | (1) 교육부장관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044-203-6658

□ 권고 내용

○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별 구체적 재난대응업무 및 피해지원 체계를 마련해 관련 계획과 매뉴얼에 반영하고 「학교구성원 재난심리회복 지원 매뉴얼」 마련 및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안전법」에 '학교구성원에 대한 추모'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수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의 역할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① 구체적 재난대응업무 및 피해지원 체계 마련

○ **(예방·대비) 재난 유형별 대책 마련** 및 학교시설 표준 매뉴얼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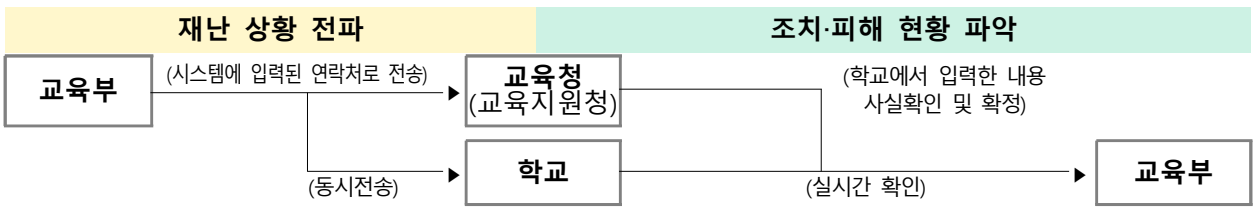
- 풍수해, 지진·지진해일, 산사태, 폭염, 낙뇌, 한파, 초미세먼지, 대형 화산폭발, 원전안전분야 등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 개정**('24.5.)
- 행안부에서 마련한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24.8.)을 준수하여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 매뉴얼 개정 추진**('25.1.)
- **대학축제, 집단연수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점검 실시**('24.5.)

○ **(신속 대응)** 교육부-교육청-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및 상황전담반**을 가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조치

- 재난 발생 시 자체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담당부서별 **학사운영조정, 인명·시설 피해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

※ (교육안전정책과) 상황 관리 총괄, (교육시설과) 시설피해, (학교교수학습혁신과) 학사운영조정 등

※ 종전에는 학교→교육(지원청)→교육부로 수기 취합받아 상황 파악이 오래 걸렸으나, 현재는 상황 발생 시 학교 현장에서 바로 입력받아 1시간 내 파악 가능



- 인명피해는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현장 파견 및 상황 관리, **심리치료, 공제급여 보상** 등 피해자-시도공제회 간 **조정·지원**

- 시설피해는 학교 및 교육청 요청 시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현장 파견, **안전조치 및 안전점검 실시** 등 **상황 관리**

○ **(피해 복구)** 학사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및 시설·심리·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정상학사운영 불가학교에 대한 대체교육시설, 2부제, 원격 수업 등 검토

-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활용한 학교구성원 **집중심리상담 지원**

- 피해시설 및 위험시설에 대한 **재난복구비**(시설안전원), 재난안전 특교 등 지원 가능 및 교육활동 중 인사상 피해는 학교안전**공제급여 지급**

② **「재난심리회복지원 매뉴얼」 마련 및 교육 강화**

○ 학생 마음건강 **전담국·부서 신설**('24.1.) 및 **위클래스, 위센터, 유관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구성원 대상 **집중심리상담 지원**

- 초·중등 교원 정신건강 역량강화 온·오프라인 교육·연수 실시 및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마음건강 증진 소식지(뉴스레터 등) 안내

○ 재난·사고로 직·간접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교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시설법」 '22.6.)

- 재난·사고 **트라우마 해소** 등 **재난 특화 심리회복 지원체계** 마련 및 **'재난심리회복지원 매뉴얼(교육시설 재난 심리지원 안내서)'** 개발('23.9.)

① 현장대응	② 초기대응	③ 초기돌봄	④ 지속돌봄
재난발생 48시간 이내	재난발생 1주일 이내	재난 발생 1개월 이내	재난 발생 1개월 이후
가. 안전확보 나. 학생-학부모 연결 다. 언론대응 및 정보공유 라. 심리적 외상수준 확인 마. 안정화 바. 접촉(**심리 안정화 매뉴얼 등 배포**)	가. 정보수집 나. 실제지원 다. 촉발자극관리 라. 애도반응 이해 <**초동대응 컨설팅**>	가. 안정화 기술 나. 지지적 의사소통 다. 극심한 스트레스 징후 라. 돌봄제공자 케어 <**안정화교육프로그램 운영**>	가. 주기별 관리 나. 전문적 치료 연계 <**1:1 개인상담 등 지원**>

- 학교급별 학생-학부모-교직원 맞춤형 **심리회복 프로그램**(13종) 및 재난 트라우마 대응 방법 등 **찾아가는 사전예방교육 실시**

※ 재난 심리지원 현황: (`22.) 79개교, 11,825명 → (`23.) 68개교, 19,485명

③ 다수 학교구성원 피해에 대한 교육기관 역할 개선

○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해서 **특별법***을 통해 **추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등

-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추진 등을 규정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상정되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 바,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 시 적극 대응** 및 **「학교안전법」 개정 여부 검토 추진**

○ 다수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에서 **신속히 대응·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체계** 등을 **지속 정비**

□ 향후 계획

○ 학교시설 및 사고 표준매뉴얼 개정: ‘24. 8월 ~ ‘25. 1월

3-20 재난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 (1) 행정안정부장관

행안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0

□ 권고 내용

○ 국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피해자의 배·보상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지원이 이뤄지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바랍니다.

□ 이행 내역

○ 재해·재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합동으로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음('16년~'24년 7월 현재, 16회 지원)

※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사례 : ('16년) 대구서문시장 화재, ('17년) 여수수산시장 화재, 인천소래포구어시장 화재, 포항 지진 ('19년) 고성·속초지역 산불, ('20년) 코로나19 ('22년) 울진·삼척·강릉·동해 산불, 수도권 등 집중호우, 이태원 참사 ('23년) 충청권 등 집중호우 ('24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의사 집단행동 등

○ 재난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별도 규정 신설 시 현행 정부의 법률구조제도*와 중복되어, 법률구조를 위해 설립한 전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앞으로도 충분한 법률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소속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운영

□ 향후 계획

○ 재해재난 피해자에게 충분한 법률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계속)

3-21 대형참사·재난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1) 국가기록원장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042-481-6266

□ 권고 내용

○ **국가기록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대형참사 및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폐기 금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18.7.~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 조치 실시

※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21개 관계부처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에 따라 폐기금지 재요청('21.8.~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연장활동 종료 시점)을 통한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완료

□ 향후 계획

○ 향후 국가적 대형참사 및 재난 발생 시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검토

3-22 참사·재난 및 조사 관련 기록물 공개·활용 (1) 국가기록원장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031-750-2059

□ 권고 내용

○ **국가기록원장**은 참사·재난 및 한시적 조사기구의 기록물 공개·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제도 개선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 현황

○ '참사·재난 및 한시적 조사기구' 기록물 정리 및 등록('18년~)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3,582철),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625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7,415철)

○ '참사·재난 및 한시적 조사기구' 기록물 목록 등 서비스 제공 중

□ 향후 계획

○ '참사·재난 및 한시적 조사기구' 기록물은 국민관심도에 부합하여 공개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임